남원시 NAMWON CITY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시 보

선람	기관의 장

www.namwon.go.kr

제29호 2023. 6. 23(금)

훈 령

○ 남원시 훈령 제451호 남원시 실·과 등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 1
○ 남원시 훈령 제452호 남원시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14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23-1187호 유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공고----------16

회람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4

「남원시 실 · 과 등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6월 23일

남원시 훈령 제 451 호

「남원시 실 · 과 등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

남원시 실 · 과 등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실 · 과 등에 두는 업무팀장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원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두는 업무팀장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각 팀장의 명칭 및 직급은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직무) 각 팀장은 각 실·과·소장, 사무국장 및 읍·면·동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장 본 청

제1절 보좌기관

제4조(기획실) 기획실에 기획팀장・예산팀장・정책분석팀장・기관유치팀장을 두고, 기획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예산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세무주사・지방전산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정책분석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기관유치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공업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제5조(감사실) 감사실에 감사팀장・조사팀장・법무규제개혁팀장・성과관리팀장을 두고, 감사팀장・조사팀장 각각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법무규제개혁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세무주사・지방시설주사로, 성과관리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세무주사・지방전산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로 보한다.

제6조(시민소통실) 시민소통실에 열린시정팀장・소규모시설팀장・생활소통팀장을 두고, 열린시정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시설주사로, 소규모시설팀장은 지방공업주사・지방시설주사・지방방재안전주사로, 생활소통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공업주사・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제2절 자치행정국

제7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에 행정팀장・인사팀장・시정지원팀장・대외협력팀장을 두고, 행정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시설주사로, 인사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시정지원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로, 대외협력팀장은 지방행정주사, 지방세무주사, 지방전산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로 보한다.

제8조(홍보전산과) 홍보전산과에 공보팀장・홍보팀장・스마트시티팀장・정보통신팀장을 두고, 공보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지방공업주사・지방농업주사로, 홍보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지방농업주사로, 스마트시티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전산주사・지방방송통신주사로, 정보통신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전산주사 또는 지방방송통신주사로 보한다.

제9조(민원과) 민원과에 종합민원팀장・가족등록팀장・지적팀장・지적재조사팀장・부동산관리팀장・공간정보팀장을 두고, 종합민원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시설주사로, 가족등록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전산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로, 지적팀장은 지방시설주사로, 지적재조사팀장・부동산관리팀장은 각각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공간정보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전산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제10조(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에 콘텐츠기획팀장, 콘텐츠마케팅팀장, 문화유산팀장, 문화예술지원팀장, 국악진흥팀장을 두고, 콘텐츠기획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시설주사로, 콘텐츠마케팅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전산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시설주사로, 문화유산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시설주사로, 문화예술지원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사

서주사로, 국악진흥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공업주사·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제11조(관광과) 관광과에 테마관광조성팀장·축제기획팀장·관광개발팀장·생태자원개발팀장을 두고, 테마관광조성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전산주사·지방시설주사로, 축제기획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세무주사·지방시설주사로, 관광개발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시설주사로, 생태자원개발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녹지주사·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제12조(교육체육과) 교육체육과에 인재양성팀장·평생교육팀장·체육진흥팀장·체육시설팀장·도서관운영팀장을 두고, 인재양성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로, 평생교육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로, 체육진흥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체육시설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도서관운영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사서주사·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제13조(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에 복지행정팀장·통합조사팀장·자활지원팀장·희망복지지원팀장을 두고 복지행정팀장·통합조사팀장은 각각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로, 자활지원팀장·희망복지지원팀장은 각각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로 보한다.

제14조(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에 노인복지팀장·노인돌봄팀장·장애인복지팀장을 두고 노인복지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로, 노인돌봄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지방보건주사·지방간호주사로, 장애인복지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지방보건주사로 보한다.

제15조(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에 여성다문화팀장·아동청소년팀장·보육지원

팀장・드림스타트팀장을 두고, 여성다문화팀장・아동청소년팀장・보육지원팀장은 각각 지방행정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로, 드림스타트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간호주사로 보한다.

제16조(재정과) 재정과에 세정팀장・징수팀장・세외수입팀장・재산세팀장・경리팀장・계약팀장・재산관리팀장을 두고, 세정팀장・징수팀장은 각각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로, 세외수입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세무주사・지방전산주사로, 재산세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세무주사로, 경리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세무주사・지방전산주사로, 계약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세무주사・지방전산주사・지방농업주사로, 재산관리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세무주사・지방공업주사・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제3절 경제농정국

제17조(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에 경제정책팀장・인구청년팀장・일자리지원팀장・사회적경제팀장・에너지팀장을 두고, 경제정책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공업주사・지방시설주사로, 인구청년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지방보건주사로, 일자리지원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전산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지방농업주사로, 사회적경제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에너지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공업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제18조(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에 전략산업팀장・항공산업팀장・기업지원팀장・투자유치팀장을 두고, 전략산업팀장・항공산업팀장은 각각 지방행정주사・

지방공업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시설주사로, 기업지원팀장·투자유치팀장은 각각 지방행정주사·지방공업주사·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제19조(농정과) 농정과에 농정기획팀장·농지관리팀장·농업시설팀장을 두고, 농정기획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농촌지도사로, 농지관리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로, 농업시설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제20조(농촌활력과) 농촌활력과에 농촌활력팀장·농촌개발팀장·새삶터정책팀장을 두고, 농촌활력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지방농촌지도사로, 농촌개발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새삶터정책팀장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시설주사·지방농촌지도사로 보한다.

제21조(원예산업과) 원예산업과에 농산물유통팀장·친환경농업팀장·자생식물육성팀장을 두고, 농산물유통팀장은 지방농업주사·지방녹지주사·지방농촌지도사로, 친환경농업팀장은 지방농업주사·지방환경주사·지방농촌지도사로, 자생식물육성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녹지주사·지방농촌지도사로 보한다.

제22조(축산과) 축산과에 신성장축산팀장·축산지원팀장·가축방역팀장·동물복지팀장을 두고, 신성장축산팀장은 지방농업주사 ·지방수의주사·지방환경주사로, 축산지원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지방수의주사로, 가축방역팀장은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수의주사로, 동물복지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수

의주사로 보한다.

제23조(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에 산림정책팀장・산림보호팀장・산림소득팀장・녹지관리팀장・백두생태팀장을 두고, 산림정책팀장・산림보호팀장・산림소득팀장은 각각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녹지주사로, 녹지관리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녹지주사・지방시설주사로, 백두생태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녹지주사・지방환경주사・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제4절 안전건설국

제24조(도시과) 도시과에 도시디자인팀장・도시관리팀장・도시재생팀장을 두고, 도시디자인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녹지주사・지방시설주사로, 도시관리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시설주사로, 도시재생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녹지주사・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제25조(건설과) 건설과에 건설행정팀장・가로정비팀장・도로팀장・통합하천정비팀장을 두고, 건설행정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시설주사로, 가로정비팀장・도로팀장은 각각 지방시설주사로, 통합하천정비팀장은 지방시설주사・지방방재안전주사로 보한다.

제26조(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에 안전정책팀장・재난관리팀장・하천관리팀장・중대재해팀장・통합관제팀장을 두고, 안전정책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시설주사・지방방재안전주사로, 재난관리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방재안전주사로, 하천관리팀장은 지방시설주사・지방방재안전주사로, 중대재해팀장은 지방시설주사・지방방재안전주사로,

통합관제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전산주사 또는 지방방송통신주사로 보한다.

제27조(환경과) 환경과에 환경행정팀장・청소팀장・환경지도팀장・폐기물자원

팀장・기후변화대응팀장을 두고, 환경행정팀장・청소팀장은 각각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로, 환경지도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공업주사・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폐기물자원팀장은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로, 기후변화대응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공업주사・지방환경주사로 보한다.

제28조(교통과) 교통과에 교통행정팀장・교통지도팀장・교통시설팀장・차량등록팀장을 두고, 교통행정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교통지도팀장・교통시설팀장・차량등록팀장은 각각 지방행정주사・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제29조(건축과) 건축과는 건축팀장・주거지원팀장・건축지원팀장・건축물관리팀장을 두고, 건축팀장은 지방시설주사로, 주거지원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지방시설주사로, 건축지원팀장은 지방시설주사로, 건축물관리팀장은 지방시설주사・지방방재안전주사로 보한다.

제3장 의회사무국

제30조(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에 의정팀장・의사팀장・홍보팀장을 두고, 의정팀장・의사팀장은 각각 지방행정주사로 홍보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제4장 직속기관

제1절 보 건 소

제31조(보건지원과) 보건지원과에 보건행정팀장・의약검진팀장・위생안전팀장을 두고, 보건행정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보건주사・지방간호주사・지방보건진료주사로, 의약검진팀장은 지방보건주사・지방약무주사・지방의료기술주사・지방간호주사로, 위생안전팀장은 지방보건주사・지방식품위생주사・지방의료기술주사・지방환경주사로 보한다.

제32조(건강생활과) 건강생활과에 감염병관리팀장・감염병대응팀장・감염병예방팀장・건강증진팀장을 두고, 감염병관리팀장은 지방보건주사・지방의료기술주사・지방간호주사로, 감염병대응팀장・감염병예방팀장은 지방보건주사・지방의료기술주사・지방간호주사・지방보건진료주사로, 건강증진팀장은 지방보건주사・지방의료기술주사・지방간호주사로 보한다.

제33조(치매안심과) 치매안심과에 치매관리팀장・방문보건팀장・정신건강팀장・모자보건팀장을 두고, 치매관리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보건주사・지방의료기술주사・지방간호주사로, 방문보건팀장은 지방사회복지주사・지방보건주사・지방의료기술주사・지방간호주사로, 정신건강팀장은 지방의료기술주사・지방간호주사・지방보건진료주사로, 모자보건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지방보건주사・지방간호주사로 보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34조(농촌진흥과) 농촌진흥과에 지도기획팀장・인력육성팀장・농식품산업팀장・농업기계팀장을 두고 지도기획팀장・농식품산업팀장・농업기계팀장은 각각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농촌지도사로, 인력육성팀장은 지방농업주사・지방농촌지도사로 보한다.

제35조(현장지원과) 현장지원과에 스마트농업팀장・식량작물팀장・과학영농팀장・과수특작팀장・내수면어업육성팀장을 두고, 스마트농업팀장은 지방공업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농촌지도사로, 식량작물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농촌지도사로, 과학영농팀장・과수특작팀장은 지방농업주사・지방농촌지도사로, 내수면어업육성담당은 지방농업주사・지방해양수산주사・지방농촌지도사로 보한다.

제5장 사 업 소

제1절 관광시설사업소

제36조(관광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에 시설지원팀장・시설정비팀장・테마시설팀장・예촌지구운영팀장을 두고, 시설지원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세무주사・지방전산주사・지방녹지주사로, 시설정비팀장은 지방공업주사・지방시설주사로, 테마시설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시설주사・지방방송통신주사・지방사무운영주사로, 예촌지구운영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제2절 환경사업소

제37조(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에 하수경영팀장・하수시설팀장・하수처리팀장을 두고, 하수경영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공업주사・지방환경주사로, 하수시설팀장・하수처리팀장은 각각 지방공업주사・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제3절 상수도사업소

제38조(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에 수도경영팀장・급수시설팀장・수도시설팀장을 두고, 수도경영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공업주사・지방환경주사로, 급수시설팀장은 지방공업주사・지방시설주사로, 수도시설팀장은 지방공업주사・지방환경주사・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제6장 읍・면・동

제1절 읍

제39조(운봉읍) ① 운봉읍에 부읍장을 두고 6급 공무원 중 적임자(팀장요원)로 보하되 주민생활팀장을 겸임한다.

② 팀장은 주민생활팀장・개발팀장・산업팀장・맞춤형복지팀장을 두고, 각 팀장은 6급 공무원 중 적임자(팀장요원)로 보한다.

제2절 면

제40조(면) ① 각 면에 부면장을 두고 6급 공무원 중 적임자(팀장요원)로 보하되 주민생활팀장을 겸임한다.

② 팀장은 주민생활팀장・산업팀장・맞춤형복지팀장을 두고 각 팀장은 6급 공무원 중 적임자(팀장요원)로 보한다.

제3절 동

제41조(동충동) 동충동에 주민생활팀장・맞춤형복지팀장을 두고, 각 팀장은 6급 공무원 중 적임자(팀장요원)로 보한다.

제42조(죽항동) 죽항동에 주민생활팀장・맞춤형복지팀장을 두고, 각 팀장은 6급 공무원 중 적임자(팀장요원)로 보한다.

제43조(노암동) 노암동에 주민생활팀장・맞춤형복지팀장을 두고, 각 팀장은 6급 공무원 중 적임자(팀장요원)로 보한다.

제44조(금동) 금동에 주민생활팀장・맞춤형복지팀장을 두고, 각 팀장은 6급 공무원 중 적임자(팀장요원)로 보한다.

제45조(왕정동) 왕정동에 주민생활팀장・맞춤형복지팀장을 두고, 각 팀장은 6급 공무원 중 적임자(팀장요원)로 보한다.

제46조(향교동) 향교동에 주민생활팀장・도시산업팀장・맞춤형복지팀장을 두고, 각 팀장은 6급 공무원 중 적임자(팀장요원)로 보한다.

제47조(도통동) 도통동에 주민생활팀장・도시산업팀장・맞춤형복지팀장을 두고, 각 팀장은 6급 공무원 중 적임자(팀장요원)로 보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 이후 인사발령 시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6월 23일

남원시 훈령 제 452 호

남원시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남원시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하고, “제2조에 따른”을 “그 밖의”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대외직명) ①「남원시 실·과 등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직을 부여받은 6급은 담당, 제2조에 따른 6급(상당)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제3조(대외직명) ①---------- ---------- ---------- ---------- 팀장, 그 밖의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남원시 공고 제2023 - 1306호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문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6일

남 원 시 장

1. 개정이유

남원시 직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화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규정 (안 제2조)

나. 직제 변경 사항 반영 (안 제5조)

다. 회의 개최사항 규정 (안 제7조)

- 정기회 개최시기 “매년 9월” → “매년 1회”

라. 종합계획 수립 사항 규정 (안 제13조)

- 계획수립 주기 “3년” → “5년”

3. 입법예고기간 : 2023. 6. 16. ~ 2023. 7. 05.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원예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우편번호 : 55738

(2) 주 소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원예산업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063-620-6745), 남원시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직접 방문 등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원예산업과(☎ 063-620-62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의 견 제 출 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3. 6.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원예산업과장

1. 개정이유

남원시 직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화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규정 (안 제2조)

나. 직제 변경 사항 반영 (안 제5조)

다. 회의 개최사항 규정 (안 제7조)

라. 종합계획 수립 사항 규정 (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6. 16. ~ 2023. 7. 05. (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남원시”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종합처리시설”을 “산지유통시설”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예허브업무”를 “원예산업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남원시”를 “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가공유통담당”을 “농산물유통담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9월에”를 “1회”로 한다.

제13조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
1.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란 남원시, 농협, 농업법인 등 산지유통 조직, 농업인 등이 공동 출자로 설립된 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 합의된 조직을 말한다.	1. ----------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 ---------- ---------- ----------.
2. “농산물 종합처리시설”이란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상품화·저장·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을 말한다.	2. ------ 산지유통시설----- ---------- ---------- ----------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경제농정국장과 원예허브업무 담당과장 및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대표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 ---------- ---------- 원예산업 업무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3. 남원시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3. 시 ----------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가공유통담당을 간사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 농산물유통담당----------.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조(회의) ① (생 략)	제7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회는 매년 9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 1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종합계획)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종합계획) ---------- 5년 ----------.

붙임 **관련 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5. 6. 22.>

② 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1. 11. 22., 2013. 3. 23., 2015. 6. 22., 2017. 3. 21., 2019. 1. 15., 2022. 1. 4.>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그 추진계획(적정 생산기반의 확보 방안 및 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다) 및 기존 추진계획의 평가·개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자급목표는 정책여건 등을 고려하되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의2.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시책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5.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6. 농업경영비 절감 등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종합적·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세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5년마다 설정·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한다. <개정 2011. 11. 22., 2013. 3. 23., 2013. 8. 13., 2014. 3. 18., 2015. 6. 22., 2022. 1. 4.>

1. 전체 식량(식용 곡물에 한정한다)자급률 및 주요 곡물의 식량자급률
2. 전체 곡물자급률 및 주요 곡물의 곡물자급률
3.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의 자급률
3의2. 조사료(粗飼料)의 자급률
4. 삭제 <2015. 6. 22.>
5. 열량 자급률(국민이 섭취하는 전체 식품의 열량 중 국내산 식품으로 충당되는 열량의 비율을 말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세운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22. 1. 4.>

⑤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2., 2013. 3. 23., 2015. 6. 22.>

⑥ 시장·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은 시·도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 및 자치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⑦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